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6
----------	------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6월 30일 이병도 의원의 11명
2. 회부일자 : 2020년 7월 8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또는 친인척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사례관리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보호자’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보호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아동학대예방계획 내용에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

- 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규정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조례안의 개요

- 최근 3년간(2019년 기준) 서울에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 중 아동학대의심 사례는 3천 3백건 대로, 그 중 매해 2천 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받고 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아동학대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계	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진행 사례
		계	응급	단순							
'20. 7월	2,122	1,980	81	1,899	114	28	1,980	1,104	42	425	409
'19	3,571	3,353	86	3,267	191	27	3,353	2,193	119	1,025	16
'18	3,660	3,399	98	3,301	222	39	3,399	2,227	131	994	47
'17	3,812	3,398	274	3,124	379	35	3,398	2,307	225	863	3

- 게다가 지난 6월 9세 아동이 새엄마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최근의 아동학대 발생 추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명 변경 (안 제명 등)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있어 예방 및 방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조례의 고유한 이름인 제명이 조례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제명외에도 개정안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규정인 목적조항(안 제1조), 적용범위(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사항(안 제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안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사항(안 제9조)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하여, 서울시의 아동학대 예방 정

책이 피해아동 보호까지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u>----- ----- -----.</p>
<p>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범위) -----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 -----.</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 --.</p>
<p>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u>방지</u>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p>	<p>②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p>

현 행	개 정 안
<p>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 -----.</p>
<p>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에 필요한 시책</p> <p>3. 아동학대의 <u>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u>의 구축에 관한 사항</p> <p>5. <u>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u>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아동학대의 <u>예방 및 방지</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p> <p>② ----- ----- -----.</p> <p>1.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p> <p>3. ----- <u>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u>----- --</p> <p>5. <u>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p> <p>6. ----- <u>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p>
<p>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u>예방 및 방지</u>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p>	<p>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 ----- <u>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p>

현 행	개 정 안
<p>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 ----- ----- -----.</p>
<p>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3. 그 밖에 <u>아동학대예방</u>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 ----- -----.</p> <p>3. ----- <u>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 -----</p>
<p>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u>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u>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p>	<p>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 ----- ----- ----- ----- ----- <u>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p>
<p>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u>예방 및 방지</u>를 목</p>	<p>제13조(사업비의 지원) ----- ----- <u>예방·방지 및 피해</u></p>



현 행	개 정 안
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아동의 보호</u> ----- ----- -----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u>예방</u>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 --- <u>예방·방지</u> ----- ----- ----- -----.

□ 보호자의 책무 (안 제4조의2 등 신설)

- 개정안은 보호자의 정의(안 제2조제5호)와 보호자의 책무(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이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보호자의 정의 및 책무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동복지법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	제2조(정의) ----- ----- 5. " <u>보호자</u>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

아동복지법	개 정 안
<p>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p> <p>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u>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u></p> <p><u>제4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u></p> <p><u>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지난 6월 발생한 새엄마가 아홉살짜리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진 사건을 비롯하여 서울에서도 15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 보호자에 의해 행해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을 포함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아동의 안전 및 학대 금지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는 부모이며,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96.6%에 해당하는 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홍보 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0,027(100)	11,715(100)	18,700(100)	22,367(100)	24,604(100)	30,045(100)
보호자	부모	8,207(81.8)	9,348(79.8)	15,048(80.5)	17,177(76.8)	18,920(76.9)	22,700(75.6)
	친인척	559(5.6)	562(4.8)	795(4.3)	1,067(4.8)	1,114(4.5)	1,332(4.4)
	대리양육자	990(9.9)	1431(12.2)	2,173(11.6)	3,343(14.9)	3,906(15.9)	4,986(16.6)
	소계	9,756(97.3)	11,341(96.8)	18,016	21,587(96.4)	23,940(96.5)	29,018(96.6)
타인		124(1.2)	187(1.6)	201(1.1)	294(1.3)	360(1.5)	663(2.2)
기타		129(1.3)	166(1.4)	454(2.4)	441(2)	304(1.2)	364(1.2)
파악안됨		18(0.2)	21(0.2)	29(0.2)	45(0.2)	-	-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8.31.),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정의(안 제2조제4호)와 설치·운영 조항(안 제4조의2)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5조<sup>1)</sup>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을 “학대아동의

1)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u>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4. ----- ----- ----- 사 <u>례관리 및</u> ----- -----.</p>
<p>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u></p>	<p>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u></p>

-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에 대해 공적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개편의 핵심은 공공에 의한 현장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로 이원화하는 것에 있음.<sup>2)</sup>

##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 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
  -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민간인)이 아동분리, 현장조사 등 강제력 행사 업무 수행 → 조사거부·신변위협 등 한계(美·英·日 등 주요국은 공무원이 수행)
  - ※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 배치, '22년까지 전국 확산
  - 시군구 공무원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로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신속·원활한 대응 및 정보 공유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분리 후 재학대 위험 소멸 및 안전 확보 시 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1인당 사례관리 64건→32건)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 치료, 양육기술·방법 등 부모 교육),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 (사례분석 강화) 매년 사망사건에 대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전수 분석·평가하여 개선 사항 도출
  -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가기관 간 통계 불일치 해소 추진

\* 출처 : 정부합동(2020.5.23.), “포용국가 아동정책”, pp. 19.

- 또한 2020년 4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 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

2) 국회입법조사처(2020.8.13.),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입법정책보고서 Vol. 51, pp. 1~2.

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민간인 신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업무수행 상의 한계가 있어, 아동학대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현장 업무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자치구의 조사업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로 이원화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을 배치하고 공공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의2 신설)

- 개정안(안 제11조의2제1항)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장에게 같은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침익적 사항에 대해 임의규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임.

개 정 안	아동복지법
<p>제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u>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u></p>	<p>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b><u>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u></b>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u>제공하여야 한다.</u> &lt;개정 2019. 1. 15.&gt;</p> <p>⑤ 국가와 <b><u>지방자치단체</u></b>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p>

개 정 안	아동복지법
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 장애에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 안 제11조의2제2항은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 등이 필요할 때 그 취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4<sup>3)</sup>에 따라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장이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개 정 안	아동복지법
제11조의3(아동학대 전담의료기 관의 지정) 시장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 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3) 「아동복지법시행령」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안	아동복지법
<u>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 **시립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안 제13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아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음.

개 정 안	아동복지법
<u>&lt;신 설&gt;</u>	<u>제13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u>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입법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6
----------	------

발의년월일 : 2020년 6월 30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혜련, 이영실, 서윤기,  
이정인, 김화숙, 봉양순, 김용연,  
신원철, 김소양, 김동식, 오현정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또는 친인척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개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호자의 범위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2020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사례관리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다. ‘보호자’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라. 보호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마. 아동학대예방계획 내용에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로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규정함.(안 제10조제3항제1호)
-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자.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차.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를 “사례관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방지”를 각각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를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예방 및 방지”를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3의2.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예방 및 방지”를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학대예방”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예방 및 방지”를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중 “예방”을 “예방·방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u>방지</u>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u>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u>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u>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사례관리</u> ----- ----- -----.</p> <p>5. “<u>보호자</u>”란 <u>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u>를 말한다</p>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제3조(적용범위)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②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

제4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생략)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4. (생략)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  
-----  
-----.

1.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2. (현행과 같음)

3. -----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  
3의2.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6. -----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  
--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  
-----.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략)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

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1. 2. (현행과 같음)

3.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

-----  
-----  
-----  
-----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 4. (생략)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시립병원,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홍보) ① -- 법 제23조에 따라 --  
-----  
-----  
--.

② 시장은 구청장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  
-----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  
-----.

제13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  
- 예방·방지 -----  
-----  
-----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